운영규정 개요

기본정보

기관명	한사랑노인복지센터	급여종류	방문요양.방문목욕
전화번호	032-552-6630	팩스번호	032-552-6631
설치일자	2012.05.03	정원	해당없음
지원대상	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		
(장기요양등급1~5등급)	※노인성질병 : 치매.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		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목적	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'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'(이하"계약"이라 한다)를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
급여계약	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. 장기요양 인정서 등급 변경 시 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을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
계약해지	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.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의 부당한 "급여외행위" 요청이 있는 경우 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. 이용자가 『노인장기요양보험법』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신원인수인권리	1.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.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엄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
신원인수인의무	1.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.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배상책임보험	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게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

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
운영규정 참조	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